대학원(계약학과) 장학금 지급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라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55조에 의거 계약학과 학생의 장학금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소속 대학원 장학금 지급 지침,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 재원은 등록금, 별도 적립기금,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내·외의 각종 단체 및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한다.

제4조(장학금의 종류와 수혜 대상) 장학금의 종류와 수혜 대상은 해당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별도로 수혜 대상의 선정이 필요한 장학금의 경우 그 선정 방법은 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 성적우수 장학금

   학업 진작을 위하여 소속 학과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성적 순위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급 인원은 소속 학과 장학금 재원 범위 내로 선발함

2. 총장 장학금

   국가 또는 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로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

3. 기타 장학금

   국내·외 교류협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규정되는 경우 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가 장학금의 종류와 금액을 심의 결정함

4. 외부 장학금

   교·내외의 각종 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에서 정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지정 또는 선발된 자

제5조(성적 및 학점기준) ① 각종 장학에 적용하는 성적기준은 당해 학기 등록한 재학생에 대하여 직전학기의 평점평균 성적으로 한다.

② 학점기준은 직전학기 6학점 이내 이수하여야 한다.

③ 외부에서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성적 및 학점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성적우수 장학금 수혜기준) ① 당해 학기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직전학기 재학생을 기준으로 제19조 제1항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제20조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직전학기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직전학기 성적 3.5 이상인 자 중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점수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에 대해서는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3조에 의거 별표 2에 정하는 이수학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구　분	내　용	최대 인정 점수
① 해당 학기 성적점수	(과목별 점수 합계/200) × 70	70
② 행사참여 및 학생회 봉사	행사별 차등 점수부여	15
③ 발전기여도 및 봉사	국내·외 수상, 각종 홍보 및 대학원 봉사	15
총점 (①+②+③)		100

※ 해당 학기 성적점수는 과목당 100점을 기준으로 2과목 총 200점으로 한다. 단,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한 성적을 적용한다.

※ 기본적인 학과행사별 참여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당해 학기 동안의 학과 행사 참여 및 기여도를 누적 기록하여 평가한다. 단, 반영 대상의 추가 및 삭제는 위원장과 위원이 상의하여 정한다.

구　분	내　용	참여 및 기여도 점수
당일행사	입학식, 졸업식, 학과체육대회, MT, 학과초청강연회, 졸업여행 등	2
2일행사	MT	4

※ 발전기여도 및 봉사점수는 국내·외 수상 및 각종 홍보, 봉사 등의 인정여부는 장학생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외부장학금 수혜 성적기준) 외부 장학금 수혜자는 외부 장학 기관이 정하는 성적 및 학점기준에 따른다.

제8조(선발시기) 장학생의 선발시기는 매 학기 단위로 학과별 장학생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 신청은 매 학기별로 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등록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 신청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은 당해 학기 등록처리 이후 매학기 학생의 개인계좌로 후지급한다.

제11조(장학생 추천) ① 장학생 추천이 필요한 장학금의 경우 각 학과에서는 별도의 장학생 추천 기준에 따라 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추천서류는 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①항 및 ②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각 학과에서는 장학생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명단을 소속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12조(명칭 및 구성) ① 본 장학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공정한 장학생 추천을 위하여 각 학과별로 장학생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각 학과 소속 학과장 1명
2. 위원 : 각 학과 소속 교수 전원 및 학생대표 2명

3. 간사 : 각 학과 소속 학사조교 1명
제13조(위원장) 위원장은 이 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위원) ① 학생대표는 각 학과 소속 학과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간사는 이 회의 실무를 전담하는 장학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되 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1. 회의의 준비
2. 회의록 작성
3. 회의결과의 업무처리
제16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장학 대상자 선정 및 추천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당해 연도 기본 방침수립 및 학과별 장학생 인원배정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의 소집은 3일 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 위원, 간사가 서명날인 후 보관한다.
제19조(장학금의 등급 및 지급액) ① 장학금의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급 : 당해 학기 본인부담금 수업료의 40%
2. 나급 : 당해 학기 본인부담금 수업료의 20%
② 등급별 지급액은 본인부담금의 범위 이내에서 전체 대상인원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지급한다. 단, 제4조 제1호를 제외한 장학 종류별 지급액은 본인부담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총장 장학금 지급액은 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외부 장학회 및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은 해당 장학회 및 개인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지급한도) 동일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교내·외 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4조 제1호는 장학금의 총액이 당해 학기 본인부담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장학금은 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학기 수업료 범위 내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이중수혜의 금지) ① 장학금은 별표1과 같이 기본장학금과 추가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추가 장학금 내에서는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고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한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생추천위원회 또는 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허용 여부를 심사한 후 처리한다.
제22조(수혜자격의 제한) ① 재학 중 각종 장학금 수혜자격이 변동된 학생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해당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휴학 등의 사유로 당해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장학금은 소멸된다.

제23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은 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다.

제24조(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항)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학금 관련 사항은 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부　칙 (제정일: 2018. 1. 19)

(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 2018. 6. 15)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포일 : 2022. 6. 9)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학금 지급 기준표>

과정	구분	장학종류	등급	장학금액
석사과정	기본장학금	성적우수	가	본인부담금 수업료의 40%
			나	본인부담금 수업료의 20%
	추가장학금	총장 장학		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기타 장학		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외부 장학		외부 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금액

(별표 2)

<성적우수장학생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기준표>

구 분	근무경력 및 학점인정				학점 인정범위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석사과정	4학점				졸업학점의 20% 범위 내

* 계약학과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입학 이전의 근무경력만 인정됨. (관련 :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17조제2항)

(별지서식 1) 장학생 선정 회의록

<table>
<tr><th colspan="4">장학생 선정 회의록</th></tr>
<tr><td colspan="4">1. 학과 :</td></tr>
<tr><td colspan="3">2. 회의일시 : 20 . . ( ) 00:00～00:00</td><td>3. 회의장소 :</td></tr>
<tr><td colspan="4">4. 참석자명단 :</td></tr>
<tr><td colspan="4">5. 안건 :</td></tr>
<tr><td colspan="4">6. 회의내용 :</td></tr>
<tr><td rowspan="3">학과 장학생 추천 위원</td><td rowspan="2">위원(장)</td><td colspan="2">학 과 장 : (인)</td></tr>
<tr><td colspan="2">학생 대표 : (인) 학생 대표 : (인)</td></tr>
<tr><td>간사</td><td colspan="2">학사조교 : (인)</td></tr>
</table>

(별지서식 2) 총장 장학금 장학생 추천서

<table>
<tr><th colspan="5">총장 장학금 장학생 추천서</th></tr>
<tr><td rowspan="4">피추천자</td><td>학 과</td><td colspan="3"></td></tr>
<tr><td>학 번</td><td></td><td>성 명</td><td></td></tr>
<tr><td>연락처</td><td></td><td>직 업
(직장명/직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 추천요지
❍ 내용

위 사람을 OO학과 총장 장학금 장학생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년 월 일</td></tr>
<tr><td rowspan="2">추천자</td><td>학 과</td><td colspan="3"></td></tr>
<tr><td>주임교수</td><td colspan="3">(인)</td></tr>
<tr><td>확인자</td><td>총 장</td><td colspan="3">(인)</td></tr>
</table>